

2019년도 제8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제8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 렬	직 류	선 발 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제8회 임 용 시 험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시설	계	3개	92명	
				일반토목	55	도 일괄 55 (목포 5, 여수 7, 순천 5, 나주 4, 광양 4, 곡성 2, 구례 2, 고흥 1, 보성 2, 화순 6, 강진 5, 해남 1, 영암 1, 함평 2, 장성 6, 진도 2)	
				건 축	27	도 일괄 27 (여수 10, 순천 1, 나주 2, 광양 3, 곡성 3, 구례 1, 장흥 1, 강진 1, 장성 2, 완도 1, 진도 2)	
				지 적	10	도 일괄 10 (여수 1, 광양 1, 고흥 3, 장흥 2, 강진 1, 진도 2)	

나. 직류별 시험과목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 렬	직 류	과목수	시험과목(1·2차 시험)
제8회 임 용 시 험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시설	일반토목	3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 축	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3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1 -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방법

- ①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1선택형)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 세부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 ② 서류전형: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 ③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 전(前)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로 자격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시험 시간

시험명	시험방법	직급	직 렬	직 류	과목수	시 험 시 간
제8회 임 용 시 험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시설	일반토목	3	10:00 ~ 11:00(60분)
				건 축	3	
				지 적	3	

3 시험문제의 출제

- 도(道) 자체출제(직류별 3과목): 문제 비공개(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정사유 등(기준일: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추가합격자 선발의 경우에도 해당 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로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정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정,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 9급: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제한없음

라. 거주지 제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가)항과 나)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나)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의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 * 예) 1986.11.1. 이전 '전라남도 광주시' 거주 사실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거주사실로 인정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제한사항
제8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시설	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2):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2):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무집, 금속채장호, 건축도장, 절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장호 문화재 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지적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2):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기능사(2) : 직류별로 정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해당 자격증(면허증)을 보유한 자 및 해당 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예정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격 요건 설명

- 1) 자격·면허증, 거주지제한, 가산특전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은 해당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이 확실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 일정			
	기간	방법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8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2019. 11. 25.(월) ~ 11. 29.(금)	인터넷 으로만 접수	필기시험	1. 8.(수)	1. 18.(토)	2. 4.(화)
			면접시험	2. 4.(화)	2. 12.(수) ~ 13.(목)	2. 21.(금)

- ※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 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인적성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에 반영됨)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http://namdo.jeonnam.go.kr/sihum>)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취소기간

-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사항은 ☎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 및 취소기간(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취소시간
	접수기간	취소기간	
제8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2019. 11. 25.(월) ~ 11. 29.(금)	2019. 11. 25.(월) ~ 12. 2.(월)	09:00 ~ 21:00

-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요일 및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 3)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 결제비용)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응시원서 접수 시 결재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확인 및 환불)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1) 전라남도인사위원회와 전라남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2)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접수기간 내에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 단, **가산점 등록**은 해당시험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3)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파일(JPG) 규격: 3.5cm × 4.5cm 기준, 해상도 100DPI이상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6개월 이내 촬영)**이어야 하며, 향후 서류전형 및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4)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5)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명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6) **‘도 일괄’ 모집분야**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임용예정기관 선택이 없습니다.

7 가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7 -

나. 의사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2)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선발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선발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의 '가'항과 '나'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직급	자격증 등급 별 가산 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며, 워드프로세서 2급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모든 임용시험의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
 - ※ 의사상자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

- 8 -

※ 자격종류 및 가산비용,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명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시험장소 공고일 이후부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고,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 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수정테이프는 수험생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PDA, MP3, 무선 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거주지·가점·학력·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9 -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격증·면허증 등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카.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 공고하며, 시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061-286-3371~6) 또는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질의응답」 코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서 볼 수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고·안내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지합니다.